

아일랜드, 단일직접지불제도(1)

유럽연합(EU)은 지속적인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서 농업정책의 무게 중심을 생산 지지에서 농촌개발 분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조 방식이 생산량 비례 방식에서 경작 면적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단일직접지불계획(Single Payment Schem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단일직접지불계획과 이 변화에 대한 농민의 대응 방식을 소개한다.

1. 단일직접지불제도의 주요 특징

(1) 단일직불제도는 2005년 도입될 예정이고 가축 평균 수(경종지원계획안 Arable Aid Scheme의 경우는 면적)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준연도(reference years) 당 각 계획안에 2002년 지불율(경종지원계획안의 경우 383.04 유로)을 곱한 만큼을 지원하게 된다.

(2)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동안 신고한 면적(ha)의 평균에 따라 단일직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지불혜택(entitlements)의 수가 결정될 것이다.

(3) 기준연도 동안 농업에 종사한 농민에게 지불혜택 지위가 부여된다. 지불혜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4)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지불 준거연도는 2000, 2001, 2002년이다.

(5) 2005년에 모든 농민은 의무적으로 지역원조(Area Aid)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단일지불제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지불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지원양식으로 두 가지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6) 2005년 지역원조/단일지불에 대해 신청을 한 자격 농가는 2005~07년 중 최소 한 해 동안은 국가준비금(National Reserve)에 재산이 몰수되거나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7) 단일지불금을 전액 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농민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만약 한 농민이 100개의 지불혜택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농지가 70ha 뿐이라면 70개의 지불혜택 권리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8) 구체적인 이유로 2005년 보유 농지가 지불혜택 권리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은 지불혜택의 합병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국가준비금을 통해서 수는 적지만 가치가 더 높은 지불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다.

(9) 개별 지불혜택의 총단위가치(gross unit value)는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일랜드의 재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지불혜택의 가치를 일정 수준 낮출 수 있다. 국가준비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최대 3%, 농촌개발수단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3-5%까지 단위가치를 낮출 수 있고, 이러한 감축을 조절(modulation)이라고 부른다.

(10) 농민들은 2004년의 특정 시점 이전까지 ‘불가항력적인(force majeure)’ 이유로 자신들이 보유한 지불혜택이 2000, 2001, 2002년을 제외한 다른 해

에 기준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11) 현재의 모든 '가축 프리미엄(Livestock Premia)' 과 경종지원계획안은 2005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에는 위의 계획안과 관계있는 모든 할당제(quotas)도 포함된다. 농촌환경보호계획안(REPS)과 비혜택지역 보상급여(Disadvantaged Areas Compensatory Allowances)는 단일직불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처럼 운영된다.

(12)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2005년 이후에도 가축을 계속 기를 수 있다. 하지만 가축 소유주는 가축을 위해 좋은 환경과 농업 조건을 유지하고 법으로 정해진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가축, 식물의 확인과 등록, 가축후생과 환경 유지를 포함한다. 농민이 영농에 필요한 조건이나 적절한 환경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적 관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3) '연계된 낙농프리미엄(coupled Dairy Premium)'이 2004년 도입되고 있다. 200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우유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생산량을 현재 수준의 97%로 줄이는 대신 갤런(3.785리터) 당 5.5센트를 받게 된다.

(14) 200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우유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현재의 97% 수준으로 생산량 감산을 전제로 갤런 당 11센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생산과 연계가 없는 것이고(de-coupled) 표준 지불혜택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2006년에는 생산량을 2005년 3월 31일 기준의 97%로 줄이는 조건으로 갤런 당 16센트를 받게 된다.

(15)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불혜택은 국가준비금으로 귀속된다.

(16) 독립기관인 단일지불 상소 위원회(Single Payment Appeals Committee)를 설립하여 지불혜택 요건에 대한 농민들의 탄원을 처리한다.

(17) 국가준비금에서 받은 지불혜택은 받은 연도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준비금으로 귀속된다.

(18) 농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불혜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지불혜택을 판매할 경우 농지를 포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지 없이 지불혜택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불혜택의 최소 80% 이상이 일년(특정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사이에 처음으로 활성화되었거나,
- 지불혜택의 80% 미만이 활성화되고, 2005년에 활성화되지 못한 지불혜택이 국가준비금에 귀속되는 경우 지불혜택을 임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단일직불제도 : 지불혜택 적용과 계산

2005년 이후로 단일직불제도가 경종지원계획안(Arable Aid Scheme)과 가축 프리미엄(Livestock Premia)을 대신하게 된다. 2004년 도입하고 있는 가축 프리미엄은 우유 할당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고(de-coupled) 2005년 3월 31일부터 단일직불제도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일랜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종지원계획안과 가축 프리미엄을 생산 과정과 어떠한 연계도 없도록 결정했다. 생산 연계가 없어지는 가축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다.

- 쇠고기 특별 프리미엄(Special Beef Premium): 1~2살 된 육우에 적용
- 쇠고기 특별 프리미엄- 거세하지 않은 황소

- 수유용 암소(suckler cow) 프리미엄 계획안
- 암양 프리미엄 계획안(Ewe Premium Scheme)
- 추가적인 암양 프리미엄(Supplementary Ewe Premium)
- 도축 프리미엄 계획안(Slaughter Premium Scheme)
- 농업 조방화 지원금(Extensification Payment) 등

일반적으로 기준연도(2000, 2001, 2002년) 동안 적극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이 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가축 프리미엄이나 경종지원계획안에 의해 지원을 받고, 2005년 이후에도 영농 활동을 계속할 농가가 단일지불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단일지불금액은 가축의 평균 두수나 경지 면적(경지지원계획안)에 의거해서 결정되고, 2000, 2001,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기준연도(reference years) 당 각 계획안의 금액에 2002년 지불율(경종지원계획안의 경우 383.04 유로)을 곱해 각각의 계획안에 대해 합산한 것이 총 단일지불금액이다.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단일지불 지불혜택’(Provisional Single Payment Entitlements)’ 성명서를 2004년 전반기 중에 각 농가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성명서는 잠정적인 지불혜택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에 수긍하지 못한 농민은 정해진 양식을 해당 부처의 지방 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불혜택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는 단일지불 상소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05년 초에 각 농민들에게 최종 단일지불 지불혜택에 대해 통고하기 위해서이다.

단일지불 금액은 몇 개의 개별 지불혜택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지불혜택의 수는 기준 연도 (2000, 2001, 2002년) 동안 지역원조 신청을 통해 신청

한 적정 규모의 평균수와 동일하다. 단일지불 금액을 이 수치로 나누면 개별 지불혜택의 화폐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기준연도 동안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받았지만 지역원조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기준 연도 동안 목초지 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2004년 지역 원조 신청에 의거하여 보유한 적절한 목초지 면적에 따라서 단일면적 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포함된 농가의 범주에는 도축 프리미엄 계획안 지원만을 받는 농가, 15마리 이하 가축을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 프리미엄, 비혜택지역 외부에서 사육을 하면서 암양 프리미엄을 받는 농가가 포함된다.

단일지불 계획안 지불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하면) 근거가 확실한 지역원조/단일지불 신청서를 마감 시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양식은 마감 시한 이전에 각 농가로 우송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불혜택을 받으려면 적절한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05년 보유 농지가 기준 연도에 신고했던 것보다 적은 농민의 경우는 지불혜택을 2005년 사용 가능한 농지에 ‘합병’¹⁾함으로써 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9항 참고)

EU 규제 하에서 단일직불제도에 따른 지급은 신청 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야 한다.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12월 1일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사회가 2005년에 사전 지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아일랜드에 대한 단일지불 계획안의 첫 지급은 2005년 12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가들은 설비 지원(Installation Aid)과 농가투자(On-Farm Investment) 같은

1) 국가준비금(National Reserve)을 통해서 수는 적지만 가치가 더 높은 지불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식을 지지하지만, 농촌환경보호계획안(REPS), 비혜택지역보상급여 하에
서의 지급은 단일지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
용된 것이다.

3. 지불혜택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지불혜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1) 기준연도 중에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2005년에도 농업에 계속 종
사할 농민

이 부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000, 2001, 2002년 동안 가축 프리
미엄의 근거가 되어온 가축 평균 수(경종지원계획안의 경우는 면적)에 따
라서 지불혜택 수준이 결정된다.

(2) 기준연도 동안 영농에 종사해 온 농민으로부터 소유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양 받은 농민

이 범주에 속하는 농민은 이양을 한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지불혜택을
이어 받는다.

(3) 국가준비금으로부터 지불혜택을 취득한 농민

이 농민의 기준과 지원 자격은 2004년 후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11항
참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낙농 프리미엄이나 지불혜택의 ‘합병’을 제외하면
지불혜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신규 가입과 상속의 경우

(1) 기준연도 동안 영농 활동에 착수한 농민

이 경우는 신규 가입자(New Entrant)로 간주해서 영농을 시작한 첫 해나 두 번째 해를 기준으로 지불혜택 수준을 산정한다.

(2) 2002년 12월 31일 이후 영농 활동을 시작했거나, 2002년에 시작했지만 해당 연도에 직접지불을 받지 않은 농민

이 경우는 국가준비금에 지불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11항 참고)

(3) 기준 연도 동안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민으로부터 소유분을 이양 받은 농민

이양 받은 농민이 기준 연도 동안 영농 활동을 시작했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양을 한 농민으로부터 지불혜택을 이양 받거나
- 신규가입자 자격으로 영농을 시작한 첫 해나 두 번째 해를 기준으로 지불혜택 수준을 산정받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보다 유리한 사항이 적용될 것이다.

5. 불가항력적 사항(예외적인 환경) 및 기준연도 동안 농업·환경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농민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가능한 모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환경을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정한다.

- 농민의 사망
- 농민이 장기간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농가 소유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자연 재해
- 축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한 이유로 파괴된 경우
- 농민의 가축 전체/일부에 영향을 주는 가축 전염병

관계 부서는 이 외의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일지불 계획안을 통제하는 규제에 따르면, 기준 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기준 연도 동안 피해를 입은 농민은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 기준량을 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기준 연도 전반에 걸쳐 지속된 경우에는 1997~99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산출량을 산정한다.

농가의 특수한 상황이 불가항력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농민은 2004년 2월 6일까지 관계부서에 세부 사항을 제출해서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분을 얻을 수 있다. 불가항력적 사항에 대해 신청을 하고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보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지불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준연도 동안 예외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2004년 2월 6일까지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지 못한 농민은 ‘잠정적 단일 지불혜택’ 성명을 받은 뒤에 다시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00~02년 동안 농업·환경이행의무(agri-environmental commitments)의 제약을 받던 농민은 지불혜택 산정을 위해 1, 2년 정도 이 의무에서 면제될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1997, 1998년 동안 매년 100마리의 양에 대해 지급을 받던 농민이 있다. 이 농민의 할당제는 1999년부터 70마리로 동결되었고, 이 결과 1999~02년 동안에는 70마리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997~98년의 평균인 1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불혜택을

결정한다.

하지만 농촌환경보호계획안의 농업·환경이행의무에 대해 보상을 받았거나 아일랜드 환경 및 지방자치부의 국가 계획안의 지급을 받은 경우는 단일직불제도의 지급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못한다.

6. 지불혜택의 종류

지불혜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표준지불혜택(Standard Entitlements)

이 지불혜택은 대부분의 농가(기준 연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직접지불을 받은 축산농가, 경종농가)를 포함한다. 축산 지불혜택을 보유하고 있고 2005년에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낙농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낙농농가가 받는 가축 프리미엄/지역지원 지불혜택은 2005년 증가하는데, 이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낙농 프리미엄 지불혜택을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이다.

기준 연도 동안 책정된 가축 프리미엄/경종지원 지불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05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낙농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낙농농가는, 2005년 소유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휴경지불혜택(Set Aside Entitlements)

기준 연도 중 한 해라도 신고한 경종지원이 15.13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총 경지 면적을 휴경해야 한다.(의무 휴경)

단일지불 계획 하에서는 이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의무 휴경 경지 면적의 평균에 의거하여 특별 휴경 지불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경종 작물의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연도에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하는 만큼의) 평

균 휴경 면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특별 휴경 지불 혜택 결정 방식은 표준 지불혜택 결정 방식과 동일하다. 즉, 기준 연도 동안의 평균 휴경 면적에 383.04유로를 곱하면 총 단일지불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삭감(deduction)을 할 경우에도 표준 지불혜택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작 가능한 경지만을 대상으로 휴경을 할 수 있다. 휴경 지불혜택은 매년 다른 지불혜택 신청을 하기 이전에 지역원조 신청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휴경 지불혜택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임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휴경 지불혜택 권리를 가진 농민이 이 권리를 다른 농민에게 판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구매/임차인은 이 권리가 수반되는 의무 사항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특별 조건 부속 지불특혜(Entitlements subject to Special Conditions)

이 지불특혜 대상은 기준 연도 동안 직접 지불을 받았지만 경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적정 규모 경지만을 가지고 있고, 단일지불 지급을 할 경우 개별 지불특혜의 가치가 상한선인 5,000 유로를 상회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경지는 10ha 뿐이지만 총 단일지불액이 75,000 유로에 이르는 농민이 있다. 이 경우 개별 지불특혜의 단위 가치는 7,500 유로(총 단일지불액 75,000/경지면적 10)

개별 지불특혜의 단위 가치 상한이 5,000 유로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위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10개의 표준 지불특혜(단위 가치: 5,000 유로)

- 5개의 특별 지불특혜(단위 가치: 5,000 유로)

특별 지불 특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기준 연도에 수행한 영농 활동 수준의 최저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급받은 단일지불 지급액이 기준 연도의 도축 프리미엄에 속한다면, 해당 농민은 단일지불 지급액 산정을 위해 이용한 도축 수의 50% 이상을 계속 도축해야 한다. 이 수준은 특별 지불혜택의 수와 비례(pro rata)한다.
- 해당 농민이 특별 지불혜택을 모두 이전(transfer)할 경우, 이전을 받은 사람은 해당 농민이 수행하던 의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거나 개별 지불혜택에 상응하는 면적의 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단일지불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지불혜택을 일부 이전할 경우, 이전을 받은 사람은 개별 지불혜택에 상응하는 면적의 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7. 지불혜택의 삭감

지불혜택의 가치는 특정한 경우 삭감할 수 있다.

- (1) 특정 비율(%)로 삭감을 하는 경우: 개별 농가의 지불혜택 합계(낙농 프리미엄 포함)가 아일랜드의 재정 상한인 13억 220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 (2) 국가 보조금 조달을 위해서 개별 지불혜택에 대해 최대 3%의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결정하지 않았다.
- (3) 조율(modulation)을 위해 3~5% 삭감을 하는 경우: 조율은 단일직불제

도의 기금을 농촌개발수단(Rural Development Measures)으로 전용하는 과정이다. 아일랜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농촌개발수단은 비혜택지역 보상급여, 조기은퇴 계획안, 농촌환경보호 계획안이다. 이 방법과 기타 관계있는 수단들은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 계획 2000~06(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06)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규제 1783/03(European Council Regulation 1783/03)은 추가적인 농촌개발 수단을 (a) 식품 품질, (b) 식품 기준 달성, (c) 가축후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05년 조율 감소치(modulation deduction)는 3%이고, 2006년에는 4%, 2007년에는 5%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조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중 3400만 유로 혹은 자금의 85%는 아일랜드의 농촌개발 수단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모든 농민이 받는 단일지불 지급금의 삭감할 것이지만, 최초의 5,000 유로에 기초하여 조율 감소치에 대해 변제할 것이다. 조율에 대한 상환도 재정 상한의 제약을 받는다.

8. 지불혜택 활성화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하고, 2005년에 근거가 확실한 지역원조/단일지불 지급금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불혜택이 국가 보조금에 환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5년 지급금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모든 지불혜택을 활성화(activate)해야 한다.

2005년에 단일지불 계획안을 신청하고 근거가 확실한 지역원조에 대한 신청을 해야 지불혜택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원조 계획안에 신청을 하면 동시에 단일직불제도에도 신청이 된다. 2005년 지원원조 계획안에 신청

을 할 수 있는 최소 농지 규모는 0.3 ha이다.(이 경우 0.3 단위의 지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불혜택 한 단위를 받으려면 1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100단위의 지불혜택을 보유하고 있던 농민이 2005년에 지역원조 신청을 하면서 10ha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경우, 그 농민은 10단위 지불혜택에 대해서만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지불혜택 권리가 국가 보조금으로 귀속되지는 않고, 해당 농민은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2년간(2006, 2007년) 행사할 수 있다.

9. 지불혜택의 합병(consolidating)

‘농민들이 기준 연도 동안 보유했던 평균 농지를 계속 100%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어떠한 이유로 2005년이나 2005년 이후에 평균 농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신고하는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EU 규제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2005년 실제로 경작한 경지의 수에 의거하여 지불혜택에 대한 지급금을 합병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원래의 지불혜택을 포기하고 국가 보조금에 상환하는 대신 ‘단위 가치가 더 높고 단위 수가 적은’ 지불혜택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단일지불 지급금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농민들은 2005년 경작할 수 있는 모든 농지 면적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총 경지 면적은 기준연도 평균 면적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연도 평균 면적의 최소 50% 이상을 매년 신고하기로 한 농민은 2005년에 양허(concession)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5년이나 그 이후에 조립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가에 이익을 줄 것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의 농민들에게 적용된다.

- 기준연도 이후에 농지 일부에서 조림사업을 하는 경우
- 비농업적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Public Authority)에 농지를 판매한 경우
- 기준연도 동안 임대/임차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기준연도 동안 아일랜드 북부에 있는 농지에 대해 농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지불혜택 합병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사례 1

1ha 당 10 유로의 지불혜택이 있는 농지를 100ha 보유하고 있고 2004년에 이 중 20ha를 조림을 위해 사용한 농민의 경우, 합병을 통해서 2005년에 80ha에 대해서 1ha당 12.50 유로씩 지급을 받을 수 있다.(총 지급액은 1,000 유로로 동일하다.)

이 농민이 2006년에 15ha를 추가로 조림 사업에 투입한 경우 65ha에 대해서 1ha당 15.38 유로를 받을 수 있다.(총지급액은 1,000 유로로 동일하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농지(즉, 조림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50ha(기준 연도 수준의 50%)이하가 되면 합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사례 2

150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이 50ha만은 자가 보유하고 100ha를 임대한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준 연도 동안 이 농지는 지역원조 신청을 했다. 2006년 100ha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다.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 대해 지불혜택을 완전히 받고자 할 경우, 이 농민은 25ha의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차하면 된다. 이 경우 총 보유 농지 면적이 75ha(기준연도 보유 농지의 50%)가 되어 합병을 할 수 있다.

(3) 사례 3

10ha의 산간 지역을 포함한 100ha의 농지-전부 조건불리지역(More Severely Handicapped Area)에 포함되는-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지는 기준 연도 동안 지역원조 신청을 했다. 이 농지에서는 150 마리의 암양, 30 마리의 수유용 암소를 방목하고 있고 새끼는 프리미엄 없이 판매한다. 이 농민은 높은 수준의 조방화 프리미엄 자격이 있어 수유용 암소 한 마리 당 80 유로를 받는다. 이 경우 조율 감소치를 적용하기 전의 총 지급금액은 약 14,000 유로이다. 이 농민은 50ha의 농지를 조림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ha 농지에 대해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조림지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세금 없이 ha당 390 유로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와 양 사육에 대해서 14,000 유로(국가 보조금에 내야 하는 감소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금은 비슷하다)를 받을 수 있고 조림지에 대해 19,500 유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33,500 유로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이 농민은 10ha의 산간지역에서 조림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비혜택지역보상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ha당 101.58 유로를 받을 수 있고, 35ha에 대해서는 ha당 88.88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4126.60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이 양허 신청 결과 농민은 추가적으로 19,500 유로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자료: 아일랜드 농식품농촌개발부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